

서울특별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의안번호  
3590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6. 4. 21.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590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3590
- 나.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 : 2026년 3월 30일
- 라. 회부일 : 2026년 3월 31일

#### 2. 제안이유

- 가.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6.10.31.자로 만료되므로,
- 나.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II. 주요내용

-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
- 추진 필요성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자립능력 향상과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 자원의 실태 및 주민욕구에 상응하는 사회복지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사례 개입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함.
  -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 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위탁대상 사무<sup>1)</sup> 등 위탁 범위

- 사례관리 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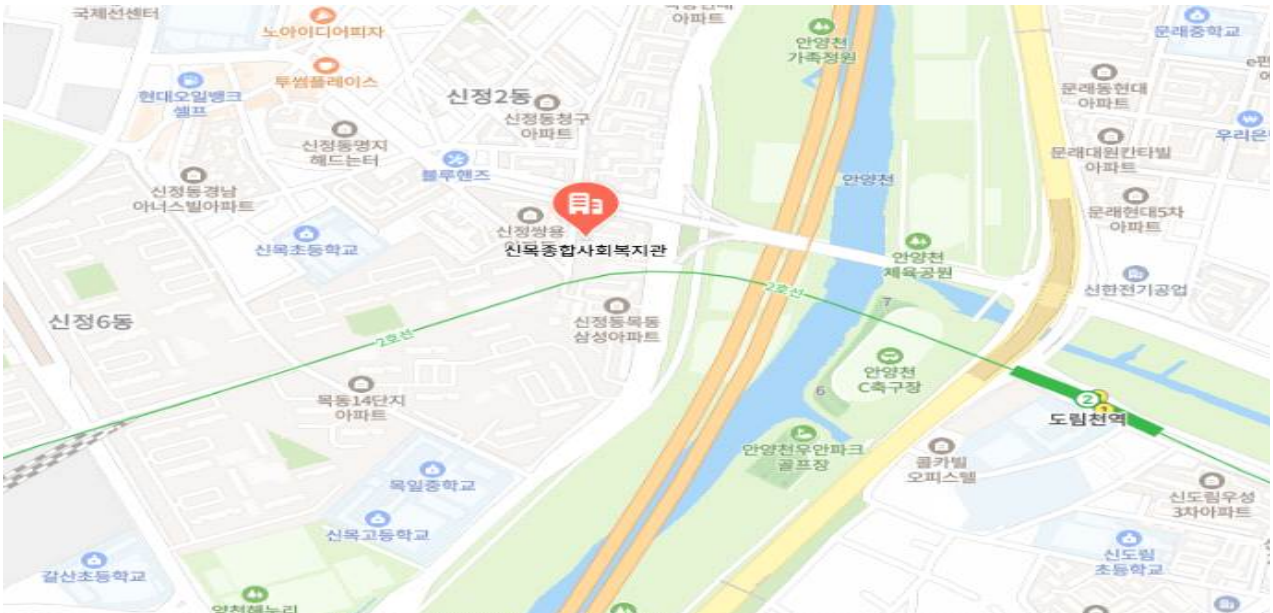
1) 민간위탁 예산지원형의 유형(2026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7)

시설형 위탁: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복지관, 도서관, 체육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 전체를 위탁함  
전세권설정, 임차시설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수반됨

사무형 위탁: 특정 시설의 운영권 없이 행정 사무(프로그램 운영, 조사, 연구 등)만을 위탁함

####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

- 소재지 :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5 외 2개동(건물3동)
- 시설규모<sup>2)</sup> : 대지면적 533.15㎡, 건물연면적 1,823.85㎡
  - 본 관 : 지상 3층(700.52㎡)
  - 별 관 : 지상 3층(583.17㎡)
  - 교육관 : 지상 3층(540.16㎡)
  - 신정7동 우리동네복지센터(414㎡, SH공사 무상임대 면적 미포함)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상담실, 강당, 자원봉사자실 등
- 위치도



- 지역여건: SH공사 임대단지 내에 위치해 지역 주민 접근 용이

#### 5. 민간위탁 기간 : 5년 (2026.11.1. ~ 2031.10.31.)

####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2) 종합사회복지관 설비기준(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별표3)

연면적 1,000㎡이상 , 강당 또는 회의실 100㎡이상, 열람좌석수 30석 이상 장서 1천권 이상의 도서실, 자원봉사자실 33㎡이상, 방음설비가 된 개별 상담실 33㎡이상, 전화상담시설, 그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설비를 갖추어야 함.

○ 시설 현황

	본관	1층	강당 및 경로식당
		2층	신정2동팀&총무팀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3층	장애인기능특화 프로그램실 2개 신목장애인주간이용시설
	별관	지하1층	대피소
		1층	신목행복자리데이케어센터
		2층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3층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
	교육관	지하1층	대피소
		1층	신목장애아전담어린이집
		2층	목동팀 사무실, 컴퓨터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개
		3층	양천외국인주민센터 조리실, 프로그램실 2개
	우리동네 복지센터	지하1층	신정7동팀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2개, 우리동네다방 경로식당 및 조리실

7. 소요예산 : 1,506,130천원 ('26년 예산 기준 민간위탁금)

- 인건비 1,165,720천원, 운영비 188,750천원, 사업비 151,660천원

8.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Ⅲ.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2)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

-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1항 제3호

-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1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IV.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윤혜숙)

### 1 동의안 제출 개요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2026.10.31.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 위탁 절차<sup>3)</sup>를 추진하기 위해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본 사무는 같은 법인과 재계약 1회 후, 위탁 기간의 지도·감독 결과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위탁을 추진함.

####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위 치		규 모	인 력
양천구 신목로 5	본관	700.52㎡	36명(정규직19명, 계약직17명)
양천구 신목로 10	별관	583.17㎡	
양천구 목동동로 12길 59	교육관	540.16㎡	

-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사례관리 기능(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 서비스제공 기능(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 지역조직화 기능(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 기타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 위탁기간 : 5년 (2026.11.1. ~ 2031.10.31.)
- 운영유형 : 시설형 재위탁
- 소요예산 : 2,049백만원 (2026년 기준)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기존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2 동의안 사무에 대한 검토

### 1.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 서울시의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를 근거로 설치되어 총 101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유일한 시립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본관, 별관, 교육관 등의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시설안에 5개의 병설시설<sup>4)</sup>이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계	소유주체					운영주체					규 모		
	시립	구립	SH	LH	법인	사복 법인	재단 법인	학교 법인	사단 법인	협동 조합	2,000㎡ 초과	1,000 ~ 2,000㎡	1,000㎡ 미만
101	1	56	15	15	14	69	8	7	10	7	58	35	8

### 2.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현황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임.
- 최초 위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서 1997년11월15일부터 2016년10월31일까지 운영하였음.
- 현 수탁법인인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동행의 위탁기간은 2021년10월31일 만료되었으며, 이후 재계약을 통해 2026년10월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임. 재계약 기간도 만료 예정임에 따라 신규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함.

4) 서울특별시립 신목조합사회복지관 병설시설 (병설시설 세부현황 검토보고서 p.16)

1. 신목장애인주간이용시설 2. 신목데이케어센터 3. 신목어르신요양센터 4. 신목장애아어린이집  
5. 양천외국인주민센터

### <민간위탁 현황>

구분	위탁기간	법인명	비고
최초위탁	1997.11.15. ~ 2000.11.14.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	
재계약	2000.11.15.~2003.11.14.		
재계약	2003.11.15.~2006.11.14.		
재계약	2006.11.15.~2009.11.14.		
재계약	2009.11.15. ~ 2012.11.14.		
재계약	2012.11.15. ~ 2016.10.31.		수탁반납(16.10.31)
재위탁	2016.11.1. ~ 2021.10.31.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동행	
재계약	2021.11.1. ~ 2026.10.31.		

### 3. 인력 현황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는 36명(정규직 19명, 계약직 17명)이 근무하고 있음

구분	계	관장	부장	과장	대리	사회복지사	안전관리 환경미화	취사원 영양사	요양 보호사	기타 (전담 상담)
정규직	19	1	1	4	4	7	1	1		
계약직	17					8	1	4	2	2

### 4. 예산 및 집행률

- 2026년 기준 민간위탁 보조금은 1,506,130천원으로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경로식당, 인생이모작, 노인일자리 등의 추가 사업 보조금을 포함하면 2,049,434천원을 지원하고 있음.
- 민간위탁 보조금 1,506,130천원중 인건비가 77.4%를 차지하며 기타 사업외의 보조금은 전액 시비로 지원됨
- 2025년 기준 복지관 전체 예산중 78% 정도가 보조금이며, 22%가 후원금, 사업수입, 법인 전입금 등의 자부담으로 구성됨. 2026년 자부

담 비율이 10%로 감소한 이유는 기간 지정 후원금이 종료되었고, 장애아동의 방과 후 수업 종료 등으로 사업수입이 감소하여 줄어든 것으로 확인됨. '22년4월 위·수탁협약서 작성시 법인의 자부담 계획에 대해 매년 10,000천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기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2026년 지원 보조금(사업별 보조금 포함)>

구 분	금액(천원)	비고
민간위탁	1,506,130	전액 시비
인건비	1,165,720	
운영비	188,750	
사업비	151,660	
기타 사업(경로식당, 인생이모작사업, 노인일자리 등)	543,304	국비21,960 시비369,605 구비245,404

### <예산현액(보조금+자부담)>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	%	2026년	%
계	4,218,821	100	3,836,062	100
보 조 금	3,290,919	78	2,049,434	54
후 원 금	571,694	14	340,300	8
사 업 수 입	38,970	0.9	0	0
전 입 금	23,400	0.5	16,550	0.5
잡 수 입	67,683	1.6	55,845	1.5
이 월 금	226,155	5	1,373,933	36

※ '25년 보조금으로 편성된 기능보강비(내진보강 공사비)가 이월되어 '26년 이월금이 증가하고 '26년 보조금이 감소함

## 5. 사업추진 현황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밀착형 지원과 기능특화, 시설개방 지원 등을 구체화하여, 3대 기능·6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능별 추진사업>

구분	주요사업	일정
사례관리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등 3개 사업	연중
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족지원, 조부모가정지원, 느린학습지원, 방학지원, 장애인지원, 공동모금회사회적돌봄 등 21개 사업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보건의료, 이동목욕, 경제적지원, 결연후원금지원, 희망온돌프로젝트 등 14개 사업	
	▶ 정신건강 사업 1개 (돌봄, 긴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 어르신교실, 시네마천국, 동네방네나들이, 건강더하기, 어르신문화활동 등 5개 사업	
	▶ 노인일자리, 파견일자리, 인생이모작지원 등 3개 사업	
지역조직화	▶ 지역연구조사, 지역네트워크, 실습지도 등 3개 사업	
	▶ 편의시설제공, 주민교육, 주민동아리, 신목봉사단, 지역캠페인, 지역밀착형복지관, 우리동네밥상 등 14개 사업	
	▶ 자원봉사자육성, 후원자개발및관리 등 2개 사업	

### ○ 특화 사업 운영

-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사회를 활용한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혼합접근 실천 서비스 모형 개발(' 23. 7. ~ 현재)
- 가족돌봄청년 돌봄부담완화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22. 7. ~ ' 25. 6.)
- 임대아파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밀착형 거점 운영(' 20. ~ ' 22.)
-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 사업(' 19. ~ 현재)

## 6. 외부자원연계 등 기타현황

### <자원봉사자 개발 및 활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등록인원	9,625	9,689	9,760	9,843	9,912
신규등록인원	61	64	71	83	69
연간 활동 인원	3,863	3,897	3,777	3,674	3,903

### <후원자 개발 및 활동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신규등록인원	79	64	56	64	82
연간 후원 인원	245	223	213	203	271
연간 후원금	319,830	488,404	561,644	494,378	484,170

### <외부 공모사업 지원금 현황>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지원처 수	6	8	9	9	8
지원금액	180,401	354,416	456,244	334,535	385,675

-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 지원하는 지역조직화 기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7. 시설 종합성과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

- 2024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종합성과평가<sup>5)</sup> 결과 안전관리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충실로 평가됨. 안전관리는 안전교육,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설 자체 안전관리 메뉴얼이 없어 보통으로 평가됨.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결과
관리지표	시설 및 안전관리	안전관리	보통
		시설환경관리	
	인적자원 관리	직원 채용의 공정성	
		직원 근속률	
		직원복지	
	재정	회계의 투명성	
		사업비 비율	
		후원금 및 외부자금 비율	
	조직역량지표	지역사회환경의 이해와 협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력의 전문성		주민의 참여	
		직원교육체계	
		시설장의 자격과 전문성	
인권증진		중간관리자의 자격과 전문성	
		직원의 인권	
		이용자 고충 처리	
사업역량지표		서비스 절차	서비스 절차의 명문화
	심층 사례관리	사례관리의 지원체계	
		사례관리의 실행체계	
	사업평가	사업평가1	
		사업평가2	
		사업평가3	
사업평가4			

5)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① 조례 제 1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 2023년~2025년 지도점검 결과

- 최근 3년간 지도점검 결과 예,결산 서류의 작성, 서류 미비치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모두 조치 완료된 것으로 확인됨.

연 번	점검일자 (점검주체)	지적사항	조치결과
1	2023.7.5. (서울시·양천구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경 필요 예산의 미편성 - 예산편성상 이월금과 실제 이월금 상이</li> <li>○ 후원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 누락</li> <li>○ 위수탁 협약상 서울시 보고 의무사항 일부 누락 - 수탁재산 정기점검 결과, 직원 신규채용 보고</li> </ul>	<p>&lt;조치완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경 편성 완료, 예산 관리 유의</li> <li>○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품) 영수증 발행 완료, 관련 조항 숙지</li> <li>○ 관련 조항 숙지, 정기점검 및 신규고용 보고 완료</li> </ul>
2	2023.12.13. (서울시·양천구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산 계정과목 부적정 사용 - '기타후생경비'에 퇴사직원 연차휴가근로수당(후원금) 포함 - '기타운영비'에 환경미화원 급여 (민간위탁금) 포함</li> </ul>	<p>&lt;조치완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과목 편성시 지출내용에 적정한 계정으로 편성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제수당, 환경미화원 급여는 일용잡급으로 집행처리</li> </ul>
3	2024.6.27. (서울시·양천구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근무상황부 미비치</li> <li>○ 1분기 임금지급명세서 미제출 (위수탁협약서 제9조)</li> <li>○ 후원식품(제과, 떡류)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표기 미흡</li> <li>○ 계단 적치물 보관</li> </ul>	<p>&lt;조치완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장 근무상황부 비치 및 작성</li> <li>○ 1분기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24.7.2.)</li> <li>○ 후원식품 수령시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확인 후 표기</li> <li>○ 계단 적치물 이동</li> </ul>
4	2025.12.11. (서울시·양천구 합동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명령서 출장시간에 이동시간 미포함</li> <li>○ 기능보강공사 대가지급 기일 미준수</li> </ul>	<p>&lt;조치완료&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신청서 작성시 이동시간을 포함하도록 조치</li> <li>○ 동일 지적사항 발생 방지를 위해 지침 교육</li> </ul>

## 8. 병설시설 현황

### <병설시설 현황>

시설명 (시 소관부서)	시설 종류 (근거 법령)	위치	설치방법	비고
신목장애인주간이용시설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복지법)	본관 3층	신고 <sup>6)</sup>	
신 목 데 이 케 어 센 터 (돌봄복지과)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별관 1층	신고 <sup>7)</sup>	
신 목 어 르 신 요 양 센 터 (돌봄복지과)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	별관 2층, 3층	신고 <sup>8)</sup>	
신 목 장애 아 어 린 이 집 (영유아담당관)	장애아어린이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교육관 1층	인가 <sup>9)</sup>	
양 천 외 국 인 주 민 센 터 (다문화담당관)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교육관 3층	사무형 위탁 <sup>10)</sup>	시립

- 위탁사무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포함됨. 본관에 위치한 신목장애인주간이용시설·별관에 위치한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신목행복자리데이케어센터는 신고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에서 관리함. 또한 교육관에 위치한 신목장애아어린이집은 신고후 인가시설로 포함하여 위탁 관리함.
- 다만 양천외국인주민센터는 시설은 관리하나, 관련 사무는 별도 위탁 관리 대상임.
- 따라서 수탁 법인 선정시 종합사회복지관 및 다양한 병설 복지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가능한 역량이 있는 법인을 선정하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6)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장애인복지법 제59조) 시설, 직원배치, 운영기준 마련후 구청장에게 신고

7) 노인요양시설의 설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 직원배치, 운영기준 마련후 구청장에게 신고

8)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시설, 직원배치, 운영기준 마련후 구청장에게 신고

9) 장애아어린이집의 지정(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시설, 직원배치, 운영기준 마련후 구청장에게 신청, 인가

10) 외국인 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 시장이 설치후 위탁

## <병설시설별 세부 현황>

### ① 시설명 : 신목장애인주간이용시설(법인)

시 설 장	김광제(사회복지관 관장 겸직)
운영법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성재)
위 치	양천구 신목로 5, 본관 3층
개관일(위탁기간)	1998.04.01.(민간위탁 기관 아님)
종사자 수	6명
정원/현원	20명 / 20명
대표사업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26년 소관부서 예산현황	○ 예산액 : 427,707천원 (운영비, 인건비 등)

### ② 시설명 : 신목행복자리어르신요양센터(시립)

시 설 장	박지은
운영법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성재)
위 치	양천구 신목로10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별관 2층, 3층
개관일(위탁기간)	2010.03.01.(위탁기관 '21.11.1~'26.10.31)
종사자 수	15명(정규직 1, 비정규직 14)
정원/현원	21명/17명
대표사업	장기요양대상자 24시간 입소보호
'26년 소관부서 예산현황	○ 예산액 : 953,500천원(운영비 등)

### ③ 시설명 : 신목행복자리데이케어센터(시립)

시 설 장	박지은
운영법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성재)
위 치	양천구 신목로 10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별관 1층

개관일(위탁기간)	2009.08.25.(위탁기간 '21.11.1~'26.10.31)
종사자 수	10명(정규직 1, 비정규직 9)
정원/현원	20명/17명
대표사업	장기요양대상자 주야간 보호
'26년 소관부서 예산현황	○ 예산액 : 550,800천원(운영비 등)

④ 시설명 : 신목장애아어린이집(국공립)

시 설 장	양천구청장(대표자), 박하나(원장)
운영법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성재)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교육관 1층)
개관일(위탁기간)	1998.9.1.(위탁기간 '21.11.1.~'26.10.31.)
종사자 수	9명(원장1, 담임교사3, 비담임교사1, 치료사1, 보육도우미2, 조리원1)
정원/현원	21명/7명
대표사업	장애아전문어린이집
'26년 소관부서 예산현황	○ 예산액 : 444,700천원 - 인건비(보육도우미), 운영비, 교재교구비 등 ※ 원장·교사·치료사 인건비 및 장애아보육료 미포함

⑤ 기관명 : 양천외국인주민센터(시립)

시 설 장	김광제(사회복지관 관장 겸직), 유성재(대표)
운영법인	복지동행사회적협동조합(대표 유성재)
위 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59(교육관 3층)
개관일(위탁기간)	2009.4.28.(위탁기간 '26.1.1.~'27.12.31.)
종사자 수	5명(센터장 복지관장 겸직, 과장1, 대리1, 사회복지사 2)
정원/현원	다수 외국인 이용시설로 해당없음
대표사업	한국어교육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외국인주민 자기 개발사업 등 지원
'26년 소관부서 예산현황	○ 예산액 : 371,048천원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센터장 인건비 미포함)

### 3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는 지역복지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고품질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운영을 위한 사무이며,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6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 해당함.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 민간위탁의 적합성, 지속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재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2026 제2차 조직담당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결정되었음.
-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자립능력 향상과 문제 및 욕구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환경, 자원의 실태 및 주민욕구에 상응하는 사회복지 전문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 기관에 위탁운영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 사례 개입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인력 등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통합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으로, 인력·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직영보다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 적합함.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사무명	유 형	現수탁법인	위탁예정기간	심의 결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시설형 재위탁	사회적협동조합 복지동행	5년 이내 (’26.11.1~’31.10.31)	적정

## 4 종합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신규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종합사회복지관 및 병설시설의 설립 목적을 고려할 때, 전문성, 공공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예산 절감 및 서비스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경쟁력 강화 등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됨.
- 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 운영의 공공성 강화 및 현장 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주민 자율 운영을 통한 지역 조직화 등 복지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음. 특히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정2동·신정7동·목동팀으로 직제화하고,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5개 병설시설을 통해 노인·장애인·영유아·다문화 가족 등 전 계층을 아우르는 대상별 맞춤형 복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의 위탁 사무는 지역적 특성과 전 연령층의 복지 욕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전문 사무임. 따라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수탁기관은 공공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향후 수탁 법인 선정 시 기관 운영관리 능력, 조직 및 사업역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 특히 본 시설은 서울시 소재 101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유일한 시립 시설로서, 다양한 병설시설을 함께 관리·운영해야 하는 중대한 사무를 수행함. 따라서 신규 위탁 법인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최적의 운영 주체를 선발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

<b>참조 1</b>	<b>자치구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b>
-------------	---------------------------

(단위:개소)

연번	자치구	계	시립	구립	법인	SH/LH
<b>합계</b>		<b>101</b>	<b>1</b>	<b>56</b>	<b>15</b>	<b>19</b>
1	종로구	1		1		
2	중구	3		3		
3	용산구	2		2		
4	성동구	3		3		
5	광진구	3		3		
6	동대문구	3		3		
7	중랑구	4			1	3
8	성북구	5		4	1	
9	강북구	4			1	3
10	도봉구	3		3		
11	노원구	9		1	1	7
12	은평구	3		3		
13	서대문구	3		2	1	
14	마포구	3		1	1	1
15	양천구	5	1	4		
16	강서구	10				10
17	구로구	3		3		
18	금천구	2		1	1	
19	영등포구	3		3		
20	동작구	6		4	1	1
21	관악구	5		3	2	
22	서초구	4		2	1	1
23	강남구	6			2	4
24	송파구	6		5	1	
25	강동구	2		2		